

제주지방법원 2016. 12. 6 선고 2015가단5665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지분말소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17. 10. 18 선고 2017나10008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6. 12. 6 선고 2015가단56658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16. 10. 11

판결 선고 2016. 12. 6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원고에게, 피고 C은 제주시 D 전 1669㎡의 1471/1669 지분(소장에 기재된 '1501/1699지분'은

오기로 보인다) 중 1/5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. 5. 4. 접수제22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E 임야 91㎡ 중 1/5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13. 6. 5. 접수 제47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, 그리고 F 임야 4588㎡ 중 1/5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13. 8. 23. 접수 제70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들은 G 지상 목조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58.68㎡의 각 1/2지분 중 U 5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13. 10. 25. 접수 제86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H은 1988. 7. 15.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과 자녀들인 원고, 피고들, J, K을 남겨 둔 채 사망하였고, I은 2013. 11. 15.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, 피고들, J, K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.

나.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D 전 1669㎡(이하 '이 사건 저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1994. 5. 4.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, 이하 '특별조치법'이라고 한다)에 의해 '1985. 3. 10. 증여'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, 이 사건 제1토지 중 198/1669 지분에 관하여 2012. 6. 7. '2012. 6. 4. 매매'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E 임야 91㎡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3. 6. 5. *2013. 6. 4. 증여'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F 임야 4588㎡(이하 '이 사건 제3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3. 8. 23. '2013. 8. 23. 증여'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G 지상 목조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58.68㎡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고 한다)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2013. 10. 25. '2013. 10. 23.

증여'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,갑 제2호증,갑 제4내지 6호증,갑 제8호증(가지번호 각 생략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

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이 사건 제1내지 3토지 및 주택에 관한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위조된 등기원인 서류에기하여 마쳐진것으로서 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,H과 I으로부터 위 각 토지 및 주택 중 1/5지분을상속받은 원고에게,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의 1471/1669 지분 중 1/5지분과 이 사건 제2, 3토지 중각 1/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,피고들은 이 사건주택의각 1/2지분 중 1/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.

그러나 갑 제3호증의 1, 2, 갑 제7호증, 갑 제9호증, 갑 제10호증,갑 제14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내지 3토지 및 주택에 관한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위조된 등기원인 서류에 기하여 마쳐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이진석